

# 2019년도 제167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27.(화), 16:00 ~ 18: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8명
  - 심의위원 : 박성호(심의위원장),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 임진모, 전용준, 정태호, 최승수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위원장

2. 전차(제2019-12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의위원

3. 안건상정 ..... 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논의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사요청 여부
- 제2호 :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 방안

4. 폐회선언 ..... 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19-101353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웹툰 복제물을 직접 복제·전송한 건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 복제물등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성명 및 주소 불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가결 여부,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3분과위원회(2019. 8. 12. 개최, 제2019-149회)가 결정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19-101354호, 제2019-10135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 10'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건으로, 크랙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 없이 컴퓨터프로그램만 제공한 사안에서 시정권고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에서 라이선스 약관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특성상 권리자는 무단 복제물의 경우에도 라이선스 인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보호원의 시정권고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정권고 심의에서 권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고려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1분과위원회(2019. 8. 22. 개최, 제2019-162회)가 결정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안전번호 제2019-101353호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 가결
- 안전번호 제2019-101354호, 101355호는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웹하드에서 포인트를 받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가결

## 2. 논의안건

### ○ 제1호 : 증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사요청 여부

- 주요내용 : 영리적, 조직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호원을 통한 수사요청 필요

### ○ 제2호 :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 방안

- 주요내용 :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차기 전체 위원회에서 재논의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67회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12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차회의록 관련하여 의견을 메일로 회신하였음
- B 위원 :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임  
회의록에 비식별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16쪽에 이용자 닉네임, 36쪽 온라인서비스명, 37쪽 이하의 사이트명은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제안함
- B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및 사이트명이 드러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01353호~101355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안건번호 제2019-101353호는 ‘△△△△’ 사이트의 인라인 링크를 통해 웹툰 ‘○○○○’ 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안임  
분과위원회 심의 당시 1화부터 34화까지 제공되고 있었으나 현재 38화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음  
(웹페이지 정보 등을 제시하면서)‘☆☆☆☆☆☆’과 ‘△△△△’ 사이트 운영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이트에서 웹툰을 가져와서 ‘△△△△’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음  
링크 정보를 확인해보면 해당 웹툰이 ‘☆☆☆☆☆☆’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01353호는 OSP가 직접 복제·전송한 건과 관련하여 제133조의3 규정 해석상 OSP가 직접 복제·전송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함  
회의 안건을 확인해보니 종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보호심의위원회 시초부터 제기된 문제임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입법자가 예상했던 영역이 아니었고, 법문자체가 OSP 직접 게시 또는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법의 형식적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함  
심의위원회 초기에는 OSP 직접 게시에 대한 심의 비율이 소수여서 무리하게 법문의 해석에 넘어서는 것까지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었음  
OSP가 직접 게시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OSP가 직접 올린 불법복제물도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아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OSP가 직접 게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견해를 밝힘
- B 위원 : 그 당시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D 위원 : OSP 직접 게시에 대해서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OSP 직접 게시 안전을 회부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 본 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이유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안전을 확인해본 결과, 시정권고 할 대상이나 정보가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OSP 직접 게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함  
OSP가 악의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하고 있어 OSP 직접 게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법문 해석에 매

여 간과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함

- B 위원 : 보충적인 관점에서 심의대상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보임
  
- E 위원 : 분과위원회 때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음
  
- A 위원 : 부연설명하면, 사건으로 시정권고 가능하다고 생각됨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이하며, '스포위키'라는 사행성 사이트가 모회사, '△△△△'과 '○○○'은 자회사로 보임  
'□□□□'에서 '△△△△'과 '○○○' 사이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큼  
'□□□□'라는 도박사이트로 사람들이 접속하게 만들기 위해 웹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유인한 것임  
심의하면서 OSP 직접 게시의 경우, 시정권고 공문을 ISP에 보내도 ISP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사행성 사이트에서 여러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시정권고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1기 심의위원회가 임기 종료 전에 OSP가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하였을 때 시정권고할 수 없다는 해석을 변경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했음  
시정권고를 하지 못한다면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보호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힘  
신고인 입장에서 보호원이 신고 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신고인은 공감할 수 없을 것임

- E 위원 : 저작물을 미끼로 다른 사행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법문의 엄격한 해석을 고수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임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B 위원 : OSP가 직접 복제·전송하는 것에 대해 OSP를 대상으로 시정 권고하자고 하는 것은 이번 논의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논의임  
 사견으로 의결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1기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보다는 2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하면 2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SP가 직접 복제·전송했을 때 상위 호스팅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시정 권고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별도 심의의결을 통해 보호원 명의로 고발조치하도록 의견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검토보고서 18쪽, 19쪽 상단의 검토내용을 보면 웹호스팅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더라도 불법 복제·전송한 OSP의 성명이나 구체적인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에는 보호원에서 집행불능이 된다고 검토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기존의 OSP 직접 게시에 관한 심의 사례에서는 'cafe24'와 같은 웹호스팅사업자가 확인되었는데, 이번 심의대상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체를 알 수 없는데 가결로 의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쉽게 말하면 본 건은 웹호스팅사업자의 정보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음

- B 위원 : OSP와 웹호스팅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인지 질의함
- A 위원 :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OSP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함
- E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 가결하더라도 OSP 정보를 알 수 없어 시정권고를 전달할 대상이 없음
- F 위원 : 웹호스팅사업자가 없는 경우와 웹호스팅사업자를 모르는 경우를 구분해야할 것임  
본 건은 웹호스팅사업자가 있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며, 존재하는 것임  
도메인 등록 대행자(Registrar)의 네임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웹호스팅사업자를 모르는 것이고, 웹호스팅사업자의 네임서버를 사용하면 알 수 있으므로 각하는 아니라고 생각함  
각하는 소송 요건이 부적법한 것인데 본 건은 웹호스팅사업자가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임  
그런 면에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함
- E 위원 : OSP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시정권고를 해도 OSP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원이 고발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논의해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A 위원 : 보호원에서 웹호스팅사업자의 정보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 F 위원 : 웹호스팅사업자 정보를 감추는 것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며, 등록할 때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B 위원 : F 위원님 말씀처럼 부결하는 것보다는 시정권고는 가결로 하고, 보호원의 집행만 불능이 되는 것임  
고발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G 위원 : 고발조치에 대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2기 심의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저작권보호원 설립의 기본 취지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중대한 저작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임
- B 위원 : 전문위원이 1기 심의위원들의 문제의식에 대해 정리하여 2기 심의위원이 임명되면 전달해줄 것이라고 생각함
- A 위원 : B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권고는 가결하지만 정보가 없으므로 보호원에서 집행불능되는 솔루션도 괜찮다고 생각함
- B 위원 : 고발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D 위원 : 가결로 의결하고 고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A 위원 : 민원인 입장에서 해당 신고 건이 부결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음
- D 위원 : I 위원님도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민원인이 신고했는데 부

결된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음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보호원을 통해 고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시정권고의 법적 성격이 행정지도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둘 중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시정권고 조치의 당사자가 되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함  
검토보고서에서 공시송달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에게 허공에 행정조치를 하라고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B 위원 : 행정지도라는 입장을 취하면 대상이 없어도 시정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com' 사이트의 웹호스팅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정리하면 될 것임  
고발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상습성, 도박사이트로의 유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논의해야 함
- G 위원 : '□□□□'와 '△△△△'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웹페이지의 정보를 볼 때 동일인이라고 의심이 되나, 확실한 것은 아님
- E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 사이트에 접속이 되었는데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한 것 같음

- F 위원 : '○○○'과 '△△△△'이 연합관계인 것 같음
- E 위원 : '△△△△'에는 게시판 기능이 없으며 사이트로 연결해주기 위한 기능만 있음  
기존의 심의대상과 다르며, 조직적임
- G 위원 : 시정권고 가결하고 보호원에서는 집행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인지 질의함
- E 위원 : 고발조치 부분도 있음
- F 위원 : 고발조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1353호는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101354호, 101355호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D 위원 : I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건으로 민원인이 신고한 것이 아님  
다른 분과에서도 온라인 심의에서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큰 문제의식 없이 의결했을 것으로 생각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의 경우에 제품키 또는 크랙킹된 것을 제공하면 불법복제물이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크랙킹되거나 제품키가 있지 않고 다운로드 가능하게 제공되는 것인데 불법복제물로 봐서 시정권고하는 것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웹하드에서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므로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I 위원님은 언제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웹하드에서 이용자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견이 달라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게 됨

- 성원영 전문위원 :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MS Windows 복제물 관련 기사를 제시하며)심의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참고자료로 어제자 신문 기사를 보고 계심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지만 MS는 쿠팡, 티몬에서 판매하는 Windows 10이 정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이러한 불법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 문제될 수 있고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임

- B 위원 :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판촉이나 마케팅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웹하드 업자가 허락없이 복제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웹하드 쪽에 포인트를 지불하게 하고 다운로드받도록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함

- F 위원 : 복제권, 전송권 침해는 맞는 것 같음

웹하드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되지만, 웹하드에 게시된 Windows는 기존의 Windows에 악성코드를 심었는지 알 수 없음

악성코드를 고려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됨

Windows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악성코드를 심었다면 운영체제를 장악해서 공인인증서, 사이트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동일한 설치프로그램이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낮지만 정보의 유출을 고려한다면 악성코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F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이며, 그런 부분을 시정권고 요건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임
- D 위원 :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인데 웹하드에서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 F 위원 : 포인트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E 위원 :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키를 받아야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1분과위원회 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상담사, 각주에 소개한 자료는 모두 동일하게 Windows의 온전한 기능을 이용하려면 라이선스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정품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E 위원 :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품인증하라고 요청하지 않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다운로드 웹페이지, 프로그램 설치 화면 캡처, 라이선스 약관을 제시하면서)Windows 10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책이 변경되어 설치할 때 라이선스 키 없음을 선택하면 라이선스 키 없이도 설치할 수 있음
- F 위원 : Windows를 사용하다보면 정품인증 받으라는 메시지가 확인됨
- B 위원 : 마이크로소프트사 Windows 10의 보안프로그램에 결합이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웹하드에 올려 제공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질의함
- F : 악의적으로 Windows 이미지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웹하드에 올릴 수 있으며,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는 알 수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신문 기사를 다시 제시하면서)F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 등 보안에 취약하다고 신문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음
- B 위원 : 심의하는 내용이 불법 복제·전송이지만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조와 관련된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의 저작권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 훼손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저작권권과 관련된 부분은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그 밖의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 H 위원 :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제품키로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무

슨 뜻인지 질의함

- F 위원 : 시중에 제품키만 2천원에 판매하는데 제품키만 구매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Windows를 다운받은 사람이 구입한 제품키를 입력하면 정품 등록됨  
이 기사는 제품키를 구매해서 정품 인증받는 것과 크랙킹된 이미지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결합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은 기사라고 생각됨
- E 위원 :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설치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제품키만 필요한 것임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다른 의견 있는지 확인함
- A 위원 : 이견 없음
- E 위원 : 동의함
- G 위원 : 이의 없음
- D 위원 : Windows와 유사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담당하는 팀과 이야기하여 권리자가 구매 전이라도 일단 프로그램 파일을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여 심의를 요청해달라고 전



달하겠음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프로그램 파일을 구매와 상관없이 먼저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점보호저작물로 선정하지 않고, 프로그램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Windows 10 설치파일을 구매 전이라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호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음

- H 위원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임

제품키나 크랙킹된 제품이 게시되면 명백한데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품키를 입력하면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정권고하기에 무리가 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라인 유통망이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고 있음

다른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체는 홈페이지 이외에 프로그램을 올려 유통하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 게시되었다고 하여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받은 후 제품키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됨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고려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구분해야 함

- F 위원 : 네이버 자료실에 Windows 10이 올라가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I 위원님이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말씀하셔서 확인해보았으나 네이버, 다음 자료실에서는 Windows 10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

- F 위원 : 마이크로소프트가 네이버나 다음 자료실에까지 배포하지 않는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저도 H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보호원의 모니터링 담당팀에서는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하나하나 소프트웨어 버전별로 무료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데다, 보호원에는 현재 감정 기능이 없는 상황인데 데드카피(dead copy) 여부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라이선스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재택근로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  
 소프트웨어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를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경우에 6대 상업저작물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가 역설적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채증이 쉬운 폰트 프로그램만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정작 저작권보호가 절실한 건축, 디자인 등 고가의 소프트웨어 복제물은 그대로 방치될 수 있음  
 음악이나 영화는 증거자료 화면으로 데드카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육안으로 데드카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H 위원 : 프로그램은 해시를 도입해서 정품 소프트웨어의 악성코드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의 해시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것에 대한 해시코드를 만든 다음 정품 소프트웨어와 해시코드를 비교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면 됨  
 해시코드가 상이하면 프로그램이 변경된 것이고 동일하면 무결성이

보장된다고 보면 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정품 소프트웨어의 해시코드를 권리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것인데, 권리자가 정품 소프트웨어의 해시코드를 보호원에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H 위원 :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시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1354호, 101355호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101353호~101355호는 만장일치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 4. 논의안건

##### ○ 제1호 :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의뢰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논의안건으로 부의해야 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고발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안건으로 심의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음  
고발조치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권리자들이 직접 고소하게 하면 안 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를 제시하면서)현재 웹툰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는데 ‘△△△△’ 메인페이지를 확인해보면 다수의 웹툰 복제물이 제공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함
- F 위원 : 고발도 좋은 의견이지만 심의위원회가 본 건에 한하여 고발한다면 본 건에 준하는 사이트는 전부 고발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해 고발 요건을 정립해야하는데 고발 요건이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해당 건들은 방심위에 요청하여 접속차단할 수 있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내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임
- F 위원 : 이 경우에는 국내사이트지만 접속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 심의위원회가 초창기부터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임  
권리자가 존재하는데 저작권보호원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의문임

시정권고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인터넷 환경에서 사법적인 구제를 택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적인 긴급조치 비슷한 형태로 빠른 시간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긴급 행정조치를 도입한 것임  
심의위원회 역할이 알게 모르게 관리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까지 생각한 측면이 있는데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형사고발을 해도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될지 알 수 없음

엄격하게 심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확장, 축소,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을 일반화하게 되면 역할이 굉장히 확장되므로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함

- B 위원 : 전체회의에 논의안건으로 상정된 이유는 권리구제와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사행성 도박사이트로 연계되도록 하위사이트에서 불법 복제·전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때문임

사행성 사이트 단속에 관한 논의 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 사안은 사행성 사이트와 불법 복제 전송사이트가 결합되어 새로운 사업 모델로 구축된 것이라고 판단됨

심의위원회와 방심위 서로 간에 업무 관장을 소홀하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구축된 사이트가 활발하게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사행성 사이트 등 기존의 불법 복제 전송사이트 이외의 범죄 사이트로 유인될 위험성이 있음

사행성 사이트와 불법복제 전송사이트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논의의 방향을 좁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A 위원 :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무조건 고발하자라는 취지는 아니고,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서 하이브리드형 범죄가 있으면 공공기관으로써 검찰, 방심위 등 관련기관들에게 정보를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B 위원 : 수사단서의 제공으로서 고발 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임
- E 위원 : 불법콘텐츠를 제공한 목적이 본인들의 불법적인 이윤 창출하는 사이트로 유도를 하고 있으며, 굉장히 조직적임  
일괄적으로 고발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절차를 마련하여 사안에 따라서 권리자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중대한 저작권 침해인 경우 고발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 C 위원 : 고소, 고발이 있어야 검찰입건이 되는데,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이 움직일 가능성이 적음  
스포츠 도박이 불법이고 상습도박, 도박장개장에 대한 도관 역할을 하므로 도박죄의 방조역할을 하는 것임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정보제공형태가 될 수도 있음

- A 위원 : C 위원님과 의견이 다름  
저작권 위반에 관해 고발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 심의를 하다 보니 범죄들이 있어서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음
- F 위원 : 만약 형사적 조치를 의결형식으로 하면 시정권고가 강제적 조치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임
- A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고발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은 보호원이 하는 것임
- E 위원 :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범죄행위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F 위원 : 그런 비슷한 문제는 방심위도 가지고 있을 것임  
음란물 등 불법 범죄에 대해 방심위에서 심의하지만 고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  
방심위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 일상적인 저작권 침해물보다 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데 절차상 한계가 있으니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음
- A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못하는 상황이라 외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으며, 타기관에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H 위원 : 도박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보았음  
최근 심의에서 불법복제 영화를 보면 화면에 사행성 사이트 주소가 작게 표시되어 있고 광고에도 불법 도박사이트가 표출되어 있음  
이런 특수한 경우에 심의위원이나 전문가는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움  
전문가는 알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간과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C 위원 : 제가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 '◆◆◆'는 운영 중이며, 트위터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고 있음  
'◆◆◆'가 유명해서 배너광고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들임  
음란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를 클릭해서 갈 수 있음  
불법은 함께 몰려다님  
이런 현상은 다른 불법저작물 사이트에서도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 같음
  
- H 위원 : 불법 도박사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정권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음



- A 위원 :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조사나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해도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발이 난무하지는 않을 것 같음
- E 위원 : 본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함
- B 위원 :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 또는 고발하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한 불법 복제의 상습성이 아니라 불법 복제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데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원인 자체가 별도의 범죄 사이트로의 유인행위를 하기 위해 이런 행위가 이뤄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권리와 이용자 간에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권리보호의 환경조성 등 때문인데 지금 논의 대상은 다른 사안임  
그런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음
- G 위원 : 저작권보호원이 보호원 명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F 위원 :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개인도 가능함
- G 위원 : 본건은 저작권 침해보다는 사행성이기 때문에 조치가 달라야 할 것임
- A 위원 : 저작권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임

- G 위원 : 저작권침해를 바탕으로 하여 사행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념임  
저작권 침해 개념만으로 접근해서는 미흡함
- B 위원 : 지난번에 논의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은 불법 복제 전송과 도박이 결합한 신종범죄  
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판단됨
- G 위원 : 지능범들이며,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음  
심의위원회는 비지능적인 것만 심의하고 있으며, 이런 하이브리드 유  
형의 범죄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함
- F 위원 : 보호원 명의로 고발할 경우, 보호원은 법정기관이며, 법에서  
정한 소관업무들이 있는데 형사고발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 A 위원 : 고발보다는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임
- F 위원 : 수사의뢰는 애매한 개념이며, 접수도 안 될 수 있음
- B 위원 : 우리는 폭넓게 논의해도 상관없을 것 같음
- G 위원 : 형사고발과 수사의뢰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함
- C 위원 : 형사고발하면 사건이 입건되므로 수사관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함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기관이 인지라는 절차를 밟아야하고 인지해야  
수사가 입건됨

수사의뢰가 온다고 해서 모든 수사의뢰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않음

- B 위원 : 수사단서의 제공은 고소, 고발보다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라고 제공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인지를 안 할 가능성도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다음 절차는 보호원의 담당부서에서 문체부로 수사요청 공문을 보내는 절차로 이뤄질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특사경 소관업무가 저작권수사업무이므로 이첩이 필요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특사경이 수사해서 송치하면 저작권법 위반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추가로 할 수 있음
- B 위원 : 수사요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고발 또는 수사요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의결내용을 근거로 담당 부서에서 문체부에 공문을 발송하면 문체부 특사경에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업무가 이뤄질 것임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논의안건 제1호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사요청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사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을 확인함

## ○ 제2호 :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 방안

- 성원영 전문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여 차기 전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였음

지난 전체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직제규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심의위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였음

최근 민원 신고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 및 복제·전송자 정보제공청구 심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심의 내용에 따라서는 저작물성 판단 등 실체 판단이 필요하거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음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사본(dead copy)을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여부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작권침해 판단은 어려운 문제임

심의위원회가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사본(dead copy)이 문제된 사안만을 심의대상으로 한정하여 않는 이상 저작물성 판단과 같은 실체 판단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시정권고 심의에서 복제·전송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한 자막, 복제·전송자가 직접 우리말로 더빙(dubbing)한 영상물, 영화상영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엔딩크레딧 화면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는 안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불법복제물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호원 원장이 부의한 사안에 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지금 예정된 시간을 많이 지났는데, C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기능조정 강화방안에 대해 연구하시기로 하였으므로 오늘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포함해서 심의 기능조정 방안에 대하여 C 위원님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C 위원님이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작성하기로 하였으므로 작성이 완료된 연구주제 내용을 토대로 차기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음

## 5. 폐회 선언

- o 박성호 심의위원장이 제167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67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26.

심의위원장 박성호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

위원 손승우

위원 임진모

위원 전용준

위원 정태호

위원 최승수